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 지급 관련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인...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임.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Q 경조사비용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나현철**



Q 1주택수거요금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주택수거요금제도는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 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고객에 적용합니다.

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전기요금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행정관서(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신청 다음달부터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행정관서에 비치되어 있음.

Q 공장과 사택이 함께 있는데 이 경우 사택의 해당 계약종별은 무엇입니까?

A 사택이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어도 사택은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공장이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수전 받고 있으면 사택은 모자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김중명**



독감 예방 접종

흔히 인플루엔자(Influenza)라고 불리는 독감은 감기와 많이 혼동되고 있는데, 크게 감기는 원인이 되는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들 중 하나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를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입니다.

아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은 온대 지방에서는 추운 계절에 일어나고 열대 지방에서는 우기에 일어나며 유행 시기에는 보통 10~20%의 발병률을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 고위험군에서는 40~50%의 발병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 전형적인 증상은 고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인후통과 근육통, 두통, 피로감이며 심한 증상은 보통 5일 이상 지속되지 않지만 기침이나 피로감은 열흘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한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합병증을 의심해야하며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으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2차적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심근염, 근육염과 어린 아이들에게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쓸때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는 라이(Reye)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가정의학과 031-539-9162)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토지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

Q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곳을 통하여 건축지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 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법의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써(대법원 1984.9.11. 83도2317) 불특정다수인, 즉 일반공중의 통행에 항상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19조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 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통행로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권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14. 96대10171). 그러므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통행 방해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지금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피임약을 복용하면, 정기적으로 복용을 휴 약 해야 되나요?

A 예전에는 몇 년간 피임약을 복용한 후 인체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2~3달 정도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휴식기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피임약은 실제로 4주중 3주 동안만 피임약을 복용하므로, 인체는 매달 휴식기간을 갖게 되므로, 임신을 계획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 약을 할 경우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Q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드름이나 기미가 생기나요?

A 예전에 사용하던 피임약 중 일부는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였으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피임약은 저항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드문 경우에도 여드름이 얼굴에 기미를 형성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보고에 따르면 피임약이 주된 요인이기보다 강한 햇빛에 대한 노출이나 가혹한 소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얹어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시판되는 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 성분을 함유하는 일상성 피임약이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비율을 여성의 호르몬 주기에 맞춘 삼상성 피임약으로 여드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정 성분의 먹는 피임약은 여드름이 있거나 얼굴에 체모가 많은 여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종류의 피임으로 바꿔 드시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 의사선생님과 약사선생님께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농촌에서 살다가 10년 전 자녀 교육 문제로 농촌주택은 비워두고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여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요?

A 서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먼저 10년 전 서울아파트로 이사 오시기 전에 살던 농촌주택은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 이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현재 2주택자가 되며, 이사를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3주택자로 되어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50%~60%의 종과세율을 적용 받아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농가주택

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서 공부상으로 확인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농가주택이 장기간 미사용으로 형태만 존재할 뿐 비가 새고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없는 사실상의 '폐가' 상태라는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거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시고 이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제12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발명경진대회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창의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 고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활동을 촉진하고자 제12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 발명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예비 기술인력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추진기관

- 주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주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지식재산센터·창업보육센터)
- 후원 : 포천시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교육청

● 참가신청 및 접수

■ 참가자격

- (대학부) 경기북부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고등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참가신청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 9. 17(수) ~ 10.31(화) (우편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신청방법 :

- ① 우편(방문)접수: (487-711)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② E-mail: bunch09@daejin.ac.kr

● 시상계획

-발표 : 2007년 11월 중 http://tech1.daejin.ac.kr에 공지(개별연락)

● 문의 :

대진대학교 지식재산센터 Tel:(031)539-1277, Fax: (031)539-127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ech1.daejin.ac.kr 또는 www.daejin.ac.kr)참조 바랍니다.